

##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

■ 공급위치 : 경상북도 포항시 대잠동 957번지 일원

■ 공급규모 및 내역 : 아파트 지하 2층, 지상 34층, 총 3개동, 아파트 371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

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: 10% 이내)

### • 신청자격

- 대상자 :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(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이주대책 대상자, 중소기업근로자, 대한민국체육유공자, 공무원 또는 군인)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(포항시) 및 경상북도·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

※ 중소기업근로자, 군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

- ① 청약예금 : 85m<sup>2</sup>이하 또는 102m<sup>2</sup>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
- 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m<sup>2</sup>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
-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 금액이 85m<sup>2</sup>이하 또는 102m<sup>2</sup>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(단,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)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(다자녀 / 노부모 / 신혼부부 /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)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. 단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1호 제외)

### – 대상세대

(단위: m<sup>2</sup>/ 세대)

구 분(전용면적)	59A	59B	84A	84B	계
기관추천 특별공급	12	3	10	11	36

※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.

### • 당첨자 선정방법

-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(추천서)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.[미신청시 당첨자선정(동·호배정) 및 계약불가]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,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는 주택 공급신청(특별 및 일반공급)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단,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,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(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)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.